

Jisung Horizon Newsletter

November 2009 Vol.2. No.12

01 법률칼럼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세법 I
-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
(구상수 회계사)

04 열려라 중국

-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수익소유자' 개념을 명확히
(조준금 변호사)

07 Vietnam LIVE!

- 2010년도 새로이 개방되는 시장분야
(변희경 변호사)

10 주목! 이 판례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신탁 판단기준

17 최신법령

-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 및 의결권 행사 방법 규정 등
-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환산 기준 합리화 등
- 업종의 추가 등록 기준 완화 등

20 지평지성 소식

- 법무법인 지평지성-라오스 LLC, 합작로펌 JSH - LLC
설립

24 업무동향

- 지평지성, 채권금융기관을 대리하여 현대종합
상사 매각 자문 업무 수행중
- LS니꼬동제련(주)의 미국 전자스크랩 처리업체
ERI 지분 인수관련 법률자문 제공
- 지평지성, IBK증권 주관의 '중소·중견기업 기업
소유·지배구조 무료컨설팅' 컨소시엄 참여

28 지평지성 단신

- 지평지성, "2009 사랑의 연탄 나눔" 참여
- 강성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
사제도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 임성택 변호사, 『2009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
- 이소영 변호사, 『제4회 의료와 멀티미디어 심
포지엄 (IT 시대의 환자정보 보호)』 참석 및 토
론
-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국제에너지법연구회』
참석 및 발표

32 영입인사

- 최금란 중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기획특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세법 I -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



구상수 회계사

1. 들어가며

2011년부터 상장법인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선택기업은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K-IFRS 기업회계기준 전문 37). 한편, 2010년부터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76조의 8 및 동법 부칙(2008. 12. 31. 법률 제9267호) 제1조).

이렇듯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제도는 큰 변혁기에 서 있습니다. 특히 생소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K-IFRS와 세법 간에 괴리, 입법상 미비, 세법해석상의 논란 등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고에서는 K-IFRS의 도입으로 인해 세법이 맞이하게 되는 변화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K-IFRS 도입으로 인한 세법의 변화를 미리 살펴보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첫회에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있어서는 (i)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문제, (ii) 재무제표의 범위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를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문제

K-IFRS에 의하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K-IFRS 제1027호 9). 지배력이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K-IFRS 제1027호 4),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K-IFRS 제1027호 13). 따라서 일반적으로 종속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세법상으로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100% 지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76조의8 제1항). 이러한 연결납세방식을 채택할 경우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76조의 17 제1항 및 제2항).

문제는 K-IFRS에 의한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 범위와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연결범위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K-IFRS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세법 목적상 100% 자회사들로만 구성된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세법 목적상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가 기업 회계기준을 준용하지 않은 경우 비록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76조의 17 제3항).

이로 인해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작성한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에 대해 다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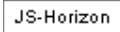
회계기준을 준용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가 된다는 위험이 있고, 이러한 위험을 피
100

하기 위해 세무목적으로 감사를 받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문제

K-IFRS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기말 재무상태표,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
표, 기간 현금흐름표로 구성됩니다(K-IFRS 제1001호 10). 반면, 법인세법에 의한 과
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첨부대상이 되는 서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
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이하 통칭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그리
고 현금흐름표로 구성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따라서 K-IFRS를 적용하여 재
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
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일부이고(상법 제447
조), K-IFRS에서도 "상법 등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를 주석으로 공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K-IFRS 제1001호 한138.1). 따라서 K-
IFRS가 도입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석에 포함되는 형태로
작성되고 유지될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므로 법인세법 내에 K-IFRS를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열려라 중국)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수익소유자' 개념을 명확히



조준금 중국변호사

중국이 외국과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중국 대륙과 홍콩 및 마카오간 체결한 세수배정 포함) 규정에는 '수익소유자'란 개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4년에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보면 모두 3개 조항에서 총 11곳에 '수익소유자'란 개념이 있습니다.

1. 한중조세협약의 수익소유자

조세협약에 의하면 중국정부와 체약국은 일반적으로 배당금, 이자 및 특허권사용료 등에서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세금 감면 대우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 중국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②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수익소유자에 대한 이해 및 수익소유자 범위에 대한 한정은 동 세수협정 중의 혜택조치가 유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수협정에서는 '수익소유자'란 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세무기관의 실무 처리에 지장을 주고, 위법자들의 탈세, 조세 회피, 세수협정 남용에 기회를 주었습니다.

2. 국가세무총국 통지 제정

이에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국세 함[2009]601호 <국가세무총국 세수협정 중의 '수익소유자' 이해 및 확정 관련 통지>(이하 <통지>라고 약칭함)를 반포하여, 체약국의 국민이 배당금, 이자와 특허권사용비용 등 조항에서 규정한 세수협정대우를 신청할 경우 국가세무기관에서 '수익소유자' 신분에 부합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데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선 <통지>는 '수익소유자'의 정의와 조건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통지'의 규정에 의하면 '수익소유자'란 소득 또는 소득으로 발생한 권리,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수익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실질적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회사 혹은 기타 임의의 단체일 수 있습니다.

3. 수익소유자 요건

'수익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수익소유자'는 실질적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둘째, '수익소유자'는 개인, 회사 혹은 기타 임의의 단체여야 한다.

셋째, '수익소유자'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발생한 권리 혹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 기타 임의의 단체여야 한다.

다음, <통지>는 '수익소유자'의 확정 표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즉 '수익소유자'의 신분을 판단할 경우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의 목적에 비추어 '형식보다 본질을 중시'하는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의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분석,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마지막으로, <통지>는 7가지 '수익소유자' 신분 확정에 불리한 상황을 열거하였습니다. 각지 세무기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른 성질의 소득에 대해 열거한 7가지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고 또한 <통지> 에서의 '수익소유자'에 대한 규정과 결합하여 신청인이 '수익소유자' 신분에 부합되는지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통지>는 대리인, Conduit Enterprises 등은 '수익소유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Conduit Enterprises에 대하여 전문적인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한 Conduit Enterprises는 일반적으로 탈세 혹은 세수 감면, 이윤 이전 혹은 누적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회사는 소재국에서만 등록하여 법률상 요구하는 조직형식을 충족시키고자 하고 제작, 위탁판매, 관리 등 실질적인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납세자들이 대리인 혹은 Conduit Enterprises 설립을 통하여 탈세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JS-Horizon

(Vietnam LIVE!)

2010년도 새로이 개방되는 시장분야



변희경 변호사·JS HORIZON Vietnam 법인장

1. 베트남의 WTO 가입 및 시장개방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가 WTO에 가입할 때에는 일시에 모든 시장분야를 개방할 경우 국내산업이 입게 될 타격을 우려하여 기존 WTO 회원국들과 각 산업별 시장개방일정을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개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장개방일정 관련 협의 결과는 양허표(Schedule)에 기재되는데, 이와 같이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은 WTO 회원국들과의 약속이므로 신규 가입국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베트남도 2007년 1월 11일 WTO에 가입하면서 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양허표를 작성하였고 이후 양허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해 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2010년도에도 새로이 개방되거나 이미 개방은 되었으나 그 내용에 변화가 있는 몇 가지 시장분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베트남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2010년도부터 변화가 있는 주요 시장분야에 관하여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시장개방분야

(1)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

지금까지는 베트남에 100%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만 베트남에서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2010년도부터는 외국회사의 지점을 설립하여 동 지점을 통하여 영업을 영위할 수도 있게 됩니다.

(2) 경영 컨설팅 관련 서비스

지금까지는 100% 현지법인 또는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베트남 회사와 경영협력계약(BCC)을 체결하는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2010년도부터는 지점을 설립하여 동 지점을 통하여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

기존에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된 관계로 지금까지는 민간부분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던 분야가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이와 같은 분야에서도 합작투자회사를 통하여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4) 광업 관련 서비스

외국회사는 베트남 회사와의 합작투자회사를 통하여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합작투자회사의 외국인 투자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부터는 이와 같은 합작투자회사의 외국인 투자지분의 한도가 51%로 인상됩니다.

(5) 전자우편, 음성메일, 온라인 정보 검색 및 처리 서비스 등

이러한 서비스는 경영협력계약 또는 합작투자회사 형태를 통하여만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합작투자회사의 외국인 투자지분은 51%를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부터는 외국인 투자지분의 한도가 65%로 인상됩니다.

(6) 인터넷 접속 제공 서비스

지금까지 설비 비보유 사업자(Non Facilities-based Services)의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통신회사와의 합작투자회사를 통하여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도 51%를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합작투자회사를 통하여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나, 베트남 파트너의 요건에 관한 제한은 없어지고 또한 합작투자회사의 외국인 투자지분의 한도도 65%로 인상됩니다.

(7) 프랜차이징 서비스

지금까지는 현지법인의 설립을 통하여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2010년도부터는 외국회사의 지점을 설립하여 동 지점을 통하여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3. 베트남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

위에 언급한 것은 WTO 양허표에 기재된 원칙이므로, 실제 베트남에 진출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그 외 베트남 국내법 및 그 하위규정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구체적인 시장 분야에 따라서는 아직 법제가 완비되지 않고 이에 관한 실무관행 또한 확립되어 있지 않아 수많은 리스크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는 베트남의 법제 및 관할기관의 실무운영에 관한 해박한 지식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JS-Horizon

(주목! 이 판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신탁 판단기준

-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사해신탁취소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회사는 2003년경 8층 규모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였는데, 2004. 8. 13.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2) A회사는 2004. 9. 10.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로하면서, 화성시장에게 등록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를 자진 신고한 후, 납부기한을 2004. 9. 12.까지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3) 그런데 A회사는 2004. 9. 1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로할 때 등기에 필요한 등록세만을 납부한 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4) 한편 A회사는 이와 같이 2003. 3.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출기관으로부터 90억 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같은 무렵 대출기관 및 시공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 시공사는 A회사의 대출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 ▷ A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대출기관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해 '토지'를 부동산신탁 회사에게 신탁한다.
- ▷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 후에 A회사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A회사는 이 사건 상가의 미분양 부분을 대출기관이 지정한 부동산신탁 회사에게 담보 또는 처분 신탁한다.

이에 따라 A회사는 2003. 3. 27. 신탁회사와 수익자를 A회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관리 등을 위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3. 3.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5) A회사는 2004. 9. 10. 신탁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신탁계약(담보신탁 내지 처분신탁, 이하 '이 사건 2차 신탁계약')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회사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A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2004. 9. 10.부터 2007. 9. 3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신탁기간 종료 전에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자) 제1순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대출기관) 수익권금액 : 7,800,000,000원, 제2순위 주식회사 풍산종합건설(시공사) 수익권금액 : 3,542,550,000원, 제3순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대출기관) 수익권금액 : 5,000,000,000원

제21조(처분대금 등 정산)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탁계약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신탁보수
2. 제3호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3. 신탁계약 체결전 설정된 저당권자 등의 채무(채권최고 한도내)
4. 신탁회사회사가 인정한 임대차계약 체결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5. 신탁회사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상의 우선수익자의 채권(증서금액 한도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A회사에게 지급

(6) A회사가 이 사건 2차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며, A회사는 2007. 3. 31.경 이 사건 조세채권을 비롯한 각종 체납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습니다.

2. 당사사의 주장

가. 원고(화성시)의 주장

A회사는 신탁법상 신탁 전에 발생한 권리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나 교부청구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조세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회사와 통모하여 2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신탁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피고(신탁회사)의 주장

A회사는 조세채권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3. 3. 27.경 신탁회사와 사이에 상가를 신축하기 위한 자금확보를 위해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시 A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및 공사대금미지급금이 잔존하는 경우 보존등기와 동시에 담보신탁을 경료하기로 한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른 채무이행의 일환으로 2004. 9. 10. 신탁회사와 2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상가에 대한 신탁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사해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1심 및 2심의 판단

가.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A회사가 2003. 3. 27. 대출기관과 시공사 사이에 '상가부지'에 대하여 신탁회사에게 신탁등기를 경료하면서, 향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보존등기경료시 대출원리금 및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잔존하는 경우 상가보존등기와 동시에 담보신탁(또는 처분신탁)을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 대출원리금 및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잔존하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① 조세채권은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채권으로서, A회사가 2003. 3. 27.경 이 사건 상가신축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채권발생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점, ②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A회사가 상가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2004. 9. 10.이 되어, 그 뒤에 추가로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채권을 징수할 수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A회사와 신탁회사는 2004. 9. 10.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 징수권이 있는 조세채권의 변제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항을 두지 아니하였고, A회사는 같은 날 발생한 등록세만을 납부한 채 신탁회사에게 신탁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에 의한 압류 및 조세징수절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점, ④ 신탁계약에 의하면, 조세채권은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신탁회사의 신탁비용채권, 상가에 대하여 추가 담보를 확보하게 되는 수익증권상의 우선수익채권보다 항상 후순위가 되는데, 이는 채권상호간의 우열관계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마음대로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 규정 등을 잠탈하게 되는 점, ⑤ A회사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비롯한 각종 조세채권을 납부하지 않은 채 신탁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조세납부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근거로 A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우선 징수권이 있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상가에 대한 이 사건 2차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차 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신탁회사는 A회사에 대하여 각 상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2심 법원의 판단

A회사는 2003. 3.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무렵 대출채권자 및 시공사와 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 후에 A회사의 대출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이 사건 상가를 농협이 지정한 부동산신탁 회사에게 신탁하기로 하였고, A회사가 2003. 3. 27.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상가의 부지인 토지를 신탁회사에게 신탁하였고, 이후 2004. 5. 17. 신탁회사와 추가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보존등기시까지 A회사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상가를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추가 약정에 따라 A회사가 2004. 9. 10.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제2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신탁회사 앞으로 경로해 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A회사와 신탁회사 사이에 2004. 9. 10. 체결된 제2차 신탁계약은,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인 2003. 3.경 A회사와 농협 사이에 체결된 사업약정, 2003. 3. 27. 위 사업약정에 따라 A회사와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차 신탁계약, 2004. 5. 17. 역시 위 사업약정에 따라 A회사와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추가 약정을 거치는 일련의 과정에 연속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2004. 8. 13. 사용승인을 받은 상가를 A회사가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이전에 체결된 법률행위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차 신탁계약은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이전에 체결된 법률행위의 이행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A회사가 상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2004. 8. 13. 당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① A회사는 2003. 3.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출기관으로부터 90억 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같은 무렵 대출기관 및 시공사와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사업약정서 제17조 제2항에서, 'A회사는 건물 보존등기시 대출원리금 및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잔존하는 경우 보존등기함과 동시에 담보신탁(또는 처분신탁)을 경로키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② A회사는 2003. 3. 27. 신탁회사와 이 사건 상가부지가 될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제1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3. 3. 31. 위 토지에 관해 '2003. 3. 27.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 ③ A회사는 2004. 5. 17. 신탁회사와 제1차 신탁계약을 변경하여, '이 사건 상가 신축건물의 보존등기시까지 A회사의 농협에 대한

채무가 완제되지 않았을 경우, 보존등기와 동시에 미분양물건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 ④ A회사는 상가에 대하여 2004. 8. 13.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4. 9. 10. 신탁회사와 사이에 상가 신축건물 61개 점포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제2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61개 점포 전부에 대하여 '2004. 9. 10.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2003. 3.경 체결한 사업약정서는 A회사와 대출기관,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신탁회사는 당사자가 아니고, 제1차 신탁계약은 이 사건 상가부지가 될 토지에 대한 부동산관리신탁에 지나지 않으며, 2004. 5. 17.자 변경약정과 위 사업약정서 제17조 제2항은 '이 사건 상가 신축건물의 보존등기시까지 A회사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가 완제되지 않았을 경우'라는 조건부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약정에 불과하여 향후 체결할 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재산, 신탁기간, 수익자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전혀 정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과 종전의 일련의 위와 같은 약정은 동일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비롯하여 사해의사 등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은 종전의 일련의 약정과 는 별도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신탁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인 제2차 신탁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원심이 제2차 신탁계약은 종전 약정과 일련의 과정에 연속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이전에 체결된 법률행위의 이행이라고 보아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평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정과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일련의 약정은 별도로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2차 신탁계약을 그 전 약정들과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당사자가 같은지, 일련의 약정에서 최종적인 법률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조건 없이 최종적인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가늠하게 되는데, 2심 법원과 대법원이 그 판단을 달리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① 종전 계약과 2차 신탁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다른 점, ② 일련의 약정에서 2차 신탁계약의 내용을 특정하지는 않은 점, ③ 2차 신탁계약은 조건부로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2차 신탁계약은 앞선 법률행위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6. 다운로드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사해신탁취소 JS-Horizon

(최신법령)

1.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 및 의결권 행사 방법 규정 등

: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839호, 2010. 5. 29. 시행)

1. 회사의 공고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하고,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 시행령 제3조의2를 신설하여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그 공고기간을 정하며, 회사로 하여금 이용자가 공고한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령 제4조의2를 신설하여 회사가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을 서면으로 출력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경우 주주명부를 비치한 것으로 보고,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경우 스팸 메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4. 시행령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며, 회사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에서 개표할 때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5. 다운로드 :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839호, 2010. 5. 29. 시행)

2.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환산 기준 합리화 등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831호, 2009. 11. 19. 시행)

1.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 후단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 환율은 직전연도 증가 환율과 직전연도 평균 환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중소기업에서 갑자기 제외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자산이 5천억원 이상인 국내외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 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도 대기업이 최대주주가 아니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중소기업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 전단을 개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831호, 2009. 11. 19. 시행)

3. 업종의 추가 등록 기준 완화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819호, 2010. 2. 11. 시행)

1. 건설공사의 다양화·복합화로 다수 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발생하여 다수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종전에는 업종별로 등록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어 건설업자가 다수 면허를 보유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i) 기존 업종을 위한 최저 자본금 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의 50퍼센트까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ii) 기술능력은 기존 업종의 기술자와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같은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종류·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제16조를 개정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819호, 2010. 2. 11. 시행) [JS-Horizon](#)

(지평지성 소식)

법무법인 지평지성-라오스 LLC, 합작로펌 JSH - LLC 설립



(사진 : 합작로펌 JSH-LLC 설립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양영태 대표변호사(좌)와 LLC 캄신 사야봉(Khamsene Sayavong) 대표변호사(우))

법무법인 지평지성(JISUNG HORIZON)이 국내 로펌 중 최초로 라오스 법

률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지평지성은 지난 11월 3일 라오스 최대 로펌인 “LLC(Lao Law & Consultancy Group)”와 독점적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합작로펌 “JSH-LLC”(JSH는 지평지성의 해외 사무소 이름 JS HORIZON의 약자)를 설립하여, 12월 8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지평지성의 양영태 대표변호사와 LLC의 캄신 사야봉(Khamsene Sayavong) 대표변호사가 JSH-LLC 설립에 대한 계약서에 날인하고 교환하였으며, 자리에는 주라오스 박재현 대사님과 라오스 상공회의소 칸다봉 다라봉 사무총장 및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변호사 130여명, 직원 120여명 규모의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국내에서 쌓아온 금융, 증권, M&A, 부동산, 소송 등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외 사업에 주력해 왔으며 중국 상해,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캄보디아 프놈펜 지사에 이어 이번에 라오스에 5번째 해외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최대민간기업인 코라오그룹의 모회사인 코라오 디벨로핑의 한국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문 등을 진행해 왔는데 본격적인 라오스 법률시장 진출을 위해 라오스 최대의 로펌인 LLC와 제휴하게 되었습니다.

LLC는 라오스 최대 로펌으로 그동안 외국기업의 라오스 투자 업무, 소송, IP 업무 등에서 성과를 보여왔으며, 이번 라오스 증권거래소 설립에 따라 형성될 라오스 자본시장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평지성과 독점적으로 제휴하여 합작로펌 JSH-LLC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JSH-LLC에 지평지성의 변호사가 현지파견 되어 지평지성 본사의 금융파트, M&A팀 및 동남아시아팀(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변호사들 및 베트남 지사, 캄보디아 지사와 협력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평지성 양영태 대표변호사는 출범식에서 “내년 10월 개장 예정인 라오스 증권거래소 설립에 따라, 라오스에도 자본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증권회사 설립, 라오스 공기업 및 사기업의 IPO, 한국자본 등 외국자본의 Pre-IPO 투자, 증권 발행, M&A 등의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지평지성과 LLC가 합작로펌인 JSH-LLC를 설립하여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합작로펌의 설립 의의를 밝혔습니다.

또한 “종래에는 국내 로펌이 해외진출을 하는 경우 주로 한국계 기업을 위하여 일을 해 온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지평지성의 라오스 진출은 현지 외국기업들을 상대로 현지 외국법을 자문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해외진출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의 자본시장 제도와 자본의 진출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도 함께 진출함으로써 한국과 라오스 간의 협력, 교류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평지성은 JSH-LLC출범을 계기로 라오스 자본시장 업무 외에 한국기업의 라오스 진출(금융, 부동산, 지분투자, M&A, 자원개발, SOC 등) 관련 자문업무도 원스톱으로 완벽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라오스 전문성 및 현지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로펌은 지평지성이 유일합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 법무법인 지평지성-라오스 로펌 협약 체결식
- 뉴시스 - 법무법인 지평지성, 국내 최초 라오스 진출
- 법률신문 - 법무법인 '지평지성' 첫 라오스 법률시장 진출
- 리걸타임즈 - 지평지성, 로펌 최초 라오스 진출

[담당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홍진경 미국변호사

[행사사진]



합작로펌 "JSH-LLC" 설립에 대한 계약서를 교환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양영태 대표변호사(좌)와 LLC 캄신 사야봉(Khamsene Sayavong) 대표변호사(우)



(좌로부터) 법무법인 지평지성 양영태 대표변호사, 라오스 상공회의소 칸다봉 다라봉 사무총장, 주라오스 박재현 대사님, LLC 캄신 사야봉(Khamsene Sayavong) 대표변호사

JS-Horizon

(업무동향)

지평지성, 채권금융기관을 대리하여 현대종합상사 매각 자문 업무 수행중

지평지성이 현대종합상사의 채권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매각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종합상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은 지난 11월 30일 '현대종합상사 인수합병 관련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건을 정식 부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달 10일에 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파이낸셜뉴스 - 현대종합상사 2350억에 매각
- 매일경제 - 현대중공업, 현대종합상사 인수 본계약 체결
- 헤럴드 경제 - 현대중, 현대상사 지분인수 본계약

[담당변호사]



명한석 변호사



김남연 변호사

JS-Horizon

(업무동향)

LS니꼬동제련(주)의 미국 전자스크랩 처리업체 ERI 지분 인수관련 법률자문 제공

LS니꼬동제련은 11월 16일, 미국의 폐 인쇄회로기판(PCB) 수집업체인 ERI 지분 10%를 500만 달러에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RI는 미 캘리포니아 최대 규모의 e-scrap recycling 업체로서, 미국 시장의 22.8%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본건과 관련하여 LS니꼬동제련(주)에 지분인수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 LS니꼬동, 美 폐PCB 수집업체 지분 10% 인수
- 매일경제 - LS, 美ERI 지분 10% 인수
- 한국경제 - LS니꼬, 美ERI 지분 인수...재활용PCB 대량 확보
- 서울경제 - LS니꼬동제련, 美 재활용업체 500 만弗에 인수

[담당변호사]



강경국 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노충욱 미국변호사



이상희 미국변호사

JS-Horizon

(업무동향)

지평지성, IBK증권 주관의 '중소·중견기업 기업소유·지배구조 무료컨설팅' 컨소시엄 참여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IBK투자증권과 협력하여 지배구조 개선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무료컨설팅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평지성의 신민 변호사는 12월 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IBK투자증권 주최의 '중소·중견기업 기업소유·지배구조 무료컨설팅'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중소·중견기업 기업소유·지배구조 무료컨설팅' 컨소시엄에는 경영·세무·법률·회계·IR 과 관련하여 IBK투자증권과 딜로이트컨설팅, 선명회계법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싸치앤싸치, 케이에스 파트너스가 참여하게 됩니다.

향후 IBK투자증권은 총괄회사로서 각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 경영, 세무, 법률, 회계, IR 등 분야별로 경영권 승계나 지주사 전환, 경영권 방어 등을 고민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주주 및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관련문의** : IBK투자증권 무료컨설팅서비스 담당 Tel. 02)6915-5111

[관련기사]

- 연합뉴스 - IBK證, 中企 지배구조개선 자문서비스 시작
- 매일경제 - 中企 지배구조 관련 무료컨설팅
- 파이낸셜뉴스 - IBK투자증권 '중소·중견기업 무료컨설팅'MOU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담당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강율리 변호사



신민 변호사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지평지성, "2009 사랑의 연탄 나눔" 참여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전문가 및 임직원은 11월 21일 서울 송파구 거여 2동에서 열린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http://www.lovecoal.org/>) 주관의 '2009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후원 성금을 기부하고 지역주민 11가구에 200장씩 연탄 총 2,200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은 2004년 6월 남과 북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2005년부터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서울신문(2009. 11. 25.) - [뉴스다큐 시선] 연탄을 담은 풍경들

[관련사진]





(법무법인 지평지성, '2009 사랑의 연탄 나눔', 2009. 11. 21.)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강성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제도운영 위원회 위원 위촉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

지평지성의 강성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JS-Horizon

임성택 변호사, 『2009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하반기 학술 대회』참석 및 발표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

2009. 11.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공동 주관으로 『2009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하반기 학술대회』가 한국 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복지에서 권리의 의미와 법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지평지성 소송파트의 임성택 변호사가 '사회복지사업법의 쟁점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중심으로'라는 내용의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JS-Horizon

이소영 변호사, 『제4회 의료와 멀티미디어 심포지엄 (IT 시대의 환자정보 보호)』 참석 및 토론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소영 변호사)

2009. 11. 20. 지평지성 IP·IT팀의 이소영 변호사가 아주대학교의료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제4회 의료와 멀티미디어 심포지엄(IT 시대의 환자정보 보호)』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의 개정 이후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JS-Horizon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국제에너지법연구회』 참석 및 발표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2009. 11. 18. 지평지성의 이승민 러시아변호사가 정부법무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에너지법연구회』에서 '러시아에너지법제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JS-Horizon

(영입인사)



최금란 중국변호사
jlcul@js-horizon.com

□ 학력사항

- 중국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 한국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경력사항

- 중국 사법시험 합격
- 중국 청도시 성양구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직원
- 중국 산둥흥전변호사사무소 법률고문
- 법무법인 충정 중국변호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상해지사 중국법률고문

□ 인사말

안녕하세요. 최금란 중국변호사입니다.

저는 중국 지방정부에서 공무원직에 있으면서 많은 외국계 기업인들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알게되었고, 제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중국 변호사사무소에서는 외국투자기업에 관한 각종 산업분야의 투자, 부동산 개발, 청산 등의 법률실무를 접하면서 경력을 쌓았고, 한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한국의 사회와 경제를 알게 되어 한국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앞으로 한국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내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JS-Horizon



지평지성
JISUNG HORIZON

<http://www.js-horizon.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7, 11층 Tel : 02)6050-1600 Fax : 02)6050-1700

강북분사무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30-7400 Fax : 02)6230-7599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호치민 사무소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Fax: 84-8-3910-7511

하노이 사무소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84-4-6266-1901 Fax: 84-4-6266-1903